



기초노령연금제도 보고 자료

2007. 10



영 등 포 구
(기초노령연금추진단)

기초노령연금제도

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 빈곤해소 효과와 현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

● 제도개요

1) 수급대상 및 시행시기

구 분	신청 및 접수	신청 대상	지급 시기	우리구 예상 수급자
1단계	'07년 10월~12월	1937.12.31이전 출생자 (만 70세 이상)	'08.1.31	10,251명
2단계	'08년 4월~6월	1943.7.31이전 출생자 (만 65세 이상)	'08.7.31	15,014명
3단계	'08년 8월 이후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	2008.8월 이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	신청한날이 속한 달의 말일	

2) 대상자 선정기준

○ 전년도 9.1일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

	노인 부부	독신 노인
소득기준 (소득만 있는 경우)	월 64만 원 이하	월 40만 원 이하
재산기준 (재산만 있는 경우)	1억5,360만 원 이하	9,600만 원 이하

※ 재산은 공시가격을 단일 환산율 5%를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
(예 : 재산가액 9600만 원×5%÷12개월=40만원/월)

3) 연금 지급액

-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의 5%를 지급함
 - '08년 추계연금액은 월 83,640원(부부노인의 경우 월133,820원)
- 단,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정함

4) 재원 조달

-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~90% 범위 안에서 국고 차등지원
 - 우리구 재정자주도는 82%, 노인인구비율은 8.5%로 50%의 국고보조
- 시·도와 시·군·구간의 분담 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함
 - 시 조례안(9.27 입법예고)에 의하면 50:50의 분담비율 예상

●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추계

○ 총소요예산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예상부담액			
	총소요액	국 비	시 비	구 비
		50%	25%	25%
기초노령연금	11,325	5,663	2,831	2,831

※ 산출근거

- 상반기 연금 지급 대상 : 10,251명(70세 이상) ⇒ 4,595 백만원
- 하반기 연금 지급 대상 : 15,014명(65세 이상) ⇒ 6,730 백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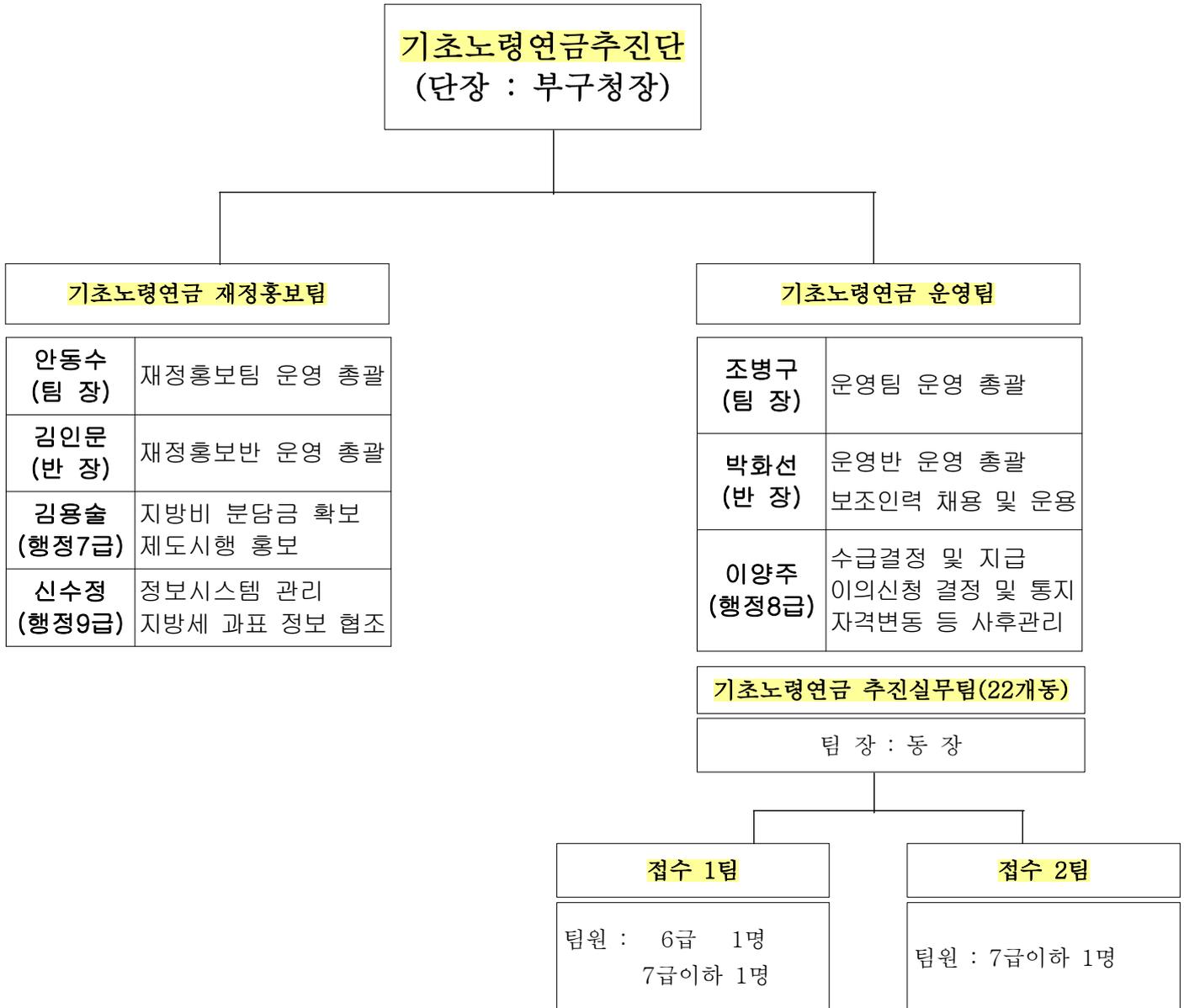
● 세부추진일정

- 기초노령연금 추진단 구성 운영 - 8.30 (별첨 참조)
- 보조인력 선발(총 24명-구2, 각동1) 및 교육 - 8.30(목), 10.11(목)
- 기초노령연금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 - 9.7(금), 9.10(월)
- 기초노령연금 담당자 상호학습 - 10.12(금)
- 1단계 연금 신청·접수 및 자산실사 - 10.15 ~ 12.31

참 고 자 료

기초노령연금추진단 인력배치현황

□ 추진단장 아래 2개 실무팀 구성과 동사무소 추진실무팀(접수1, 2팀) 구성



□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(안)

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성격이 유사한 여타 현금 지원제도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■ 노인교통수당 제도 운영 방향

-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이 전체노인의 70%에게 지급되는 '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함('09년 전면 폐지)
- '08년에는 경과조치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지급

-단계별로 지급 폐지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인들에 대해 노인교통수당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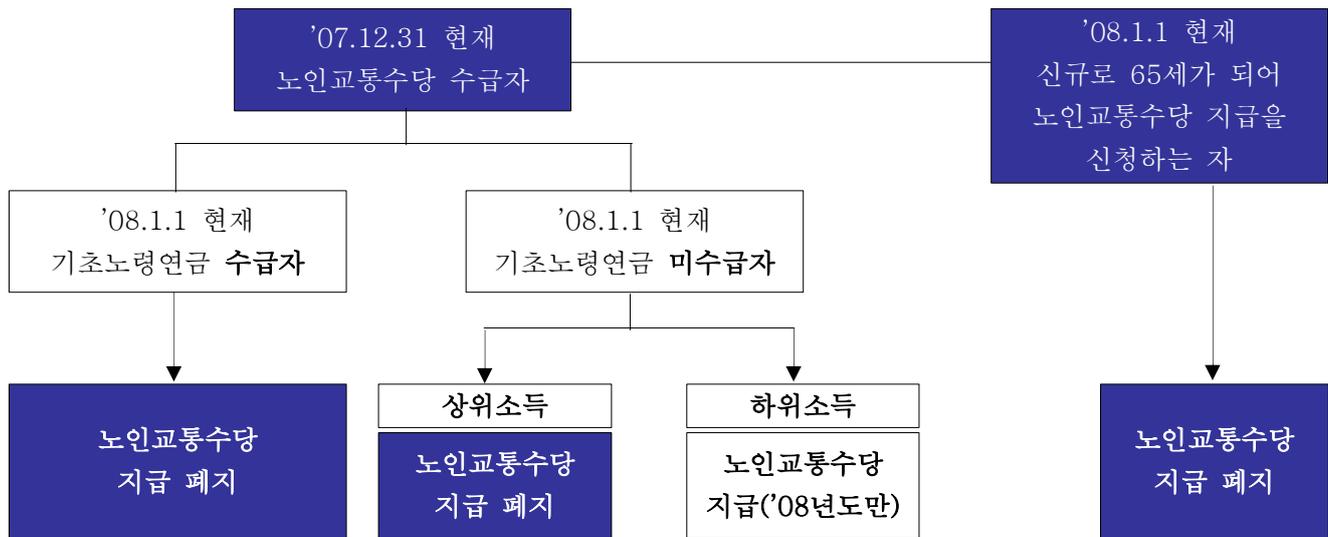
[지급 폐지 대상자]

1단계('08.1.1~6.30)

- 2008.1.1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
- '08.1.1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 전체 노인의 소득 또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위 20%내에 해당하는 자
- '08.1.1 현재 65세가 되어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신규로 신청한 자

2단계('08.7.1~12.31)

- 2008.7.1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
- '08.1.1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 전체 노인의 소득 또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위 20%내에 해당하는 자
- '08.1.1 현재 65세가 되어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신규로 신청한 자



'0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노인교통수당 전면 폐지

※ 노인교통수당 지급 폐지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노인 복지 예산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타 목적으로의 사용 제한

■ 기타 현금급여 제도 운영 방향

○ 장수수당

장수에 따른 정기적 수당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'07년 현재 보다 장수수당 지급 대상 확대(신규 지급대상 연령 도래자에 대한 지급 포함) 및 급여 수준 인상 또는 신설 금지

○ 기타 각종 현금지원 제도

노인교통수당 및 장수수당 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·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하는 경우에도 현행보다 지급 대상 확대(신규 지급대상 연령 도래자에 대한 지급 포함) 및 급여 수준 인상 또는 신설 금지